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학술상 시상 규정

제정 1979년 11월 23일

제1차 개정 1991년 3월

제2차 개정 1994년 4월 1일

제3차 개정 2002년 10월 25일

제4차 개정 2005년 11월 11일

제5차 개정 2007년 10월 26일

제6차 개정 2009년 10월 30일

제7차 개정 2012년 10월 1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발전에 공헌이 큰 학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자)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자격) 수상 대상자는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회칙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② 국내외 학술지에 심사 기준일 3년 이내에 원저로 발표된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연락책임저자
- ③ 동일한 연구업적으로 다른 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술상위원회에서 평의회에 추천한다.

제6조 (학술상위원회 구성) 학술상위원회는 5-10인 이내 위원으로 아래 각 항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 ① 위원장과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총무부장과 학술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학술상위원회 활동) 학술상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활동을 한다.

- ① 학술상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위원장에 추천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피추천인 서류를 제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피추천 후보자에게 제8조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④ 위원장은 제출받은 후보자의 서류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하게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후보자를 평의원회에 추천한다.

제8조 (추천 구비서류) 피추천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통고받은 지 2주 이내에 학술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력서 15부
- ② 연구업적 목록 15부
- ③ 연구 업적 논문 별책 또는 사본 15부

제9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확정한다.

제10조 (시상) 최종 결정된 수상자에게 매년 개최되는 정기 총회 석상에서 회장이 학술상으로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

제11조 (부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